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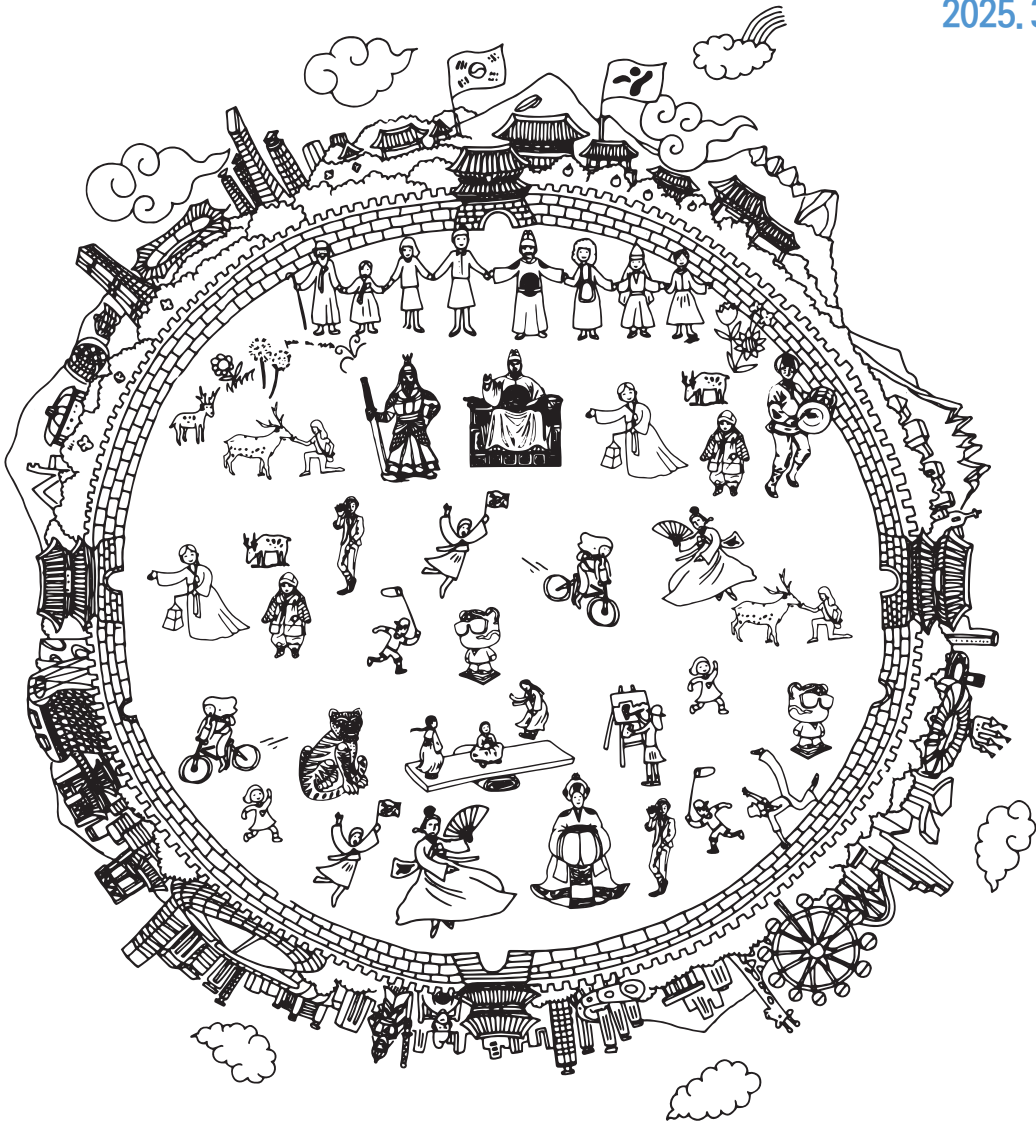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48호
2025. 3. 5.(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696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5-697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제2025-71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25-72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제2025-721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제2025-72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696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이용료 감면기준은 그 대상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시설과 본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 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표기(안 제7조의2)
- 다. 민간 키즈카페의 지원범위 대상의 명확화 및 중복개념 삭제(안 제7조의3)
- 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변경(안 별표)
-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전화: 02-2133-4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팩 스: 02-2133-0749
- (2) 이메일: kimmm9903@seoul.go.kr
-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형 키즈카페”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을 “서울형 키즈카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을 “서울형 키즈카페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 대하여”를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입장료 전액 감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바. 그 밖에 <u>시장</u> 이 인정하는 아동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서울특별시</u>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 ----- 5. “ <u>서울형 키즈카페</u> ”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u>시장</u> 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u> <u>시장</u>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u>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u>) ① 시장은 아동	제7조의2(<u>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u>) ① -----

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지원)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
2. ~ 4. (생략)

----- 서울형 키즈카페 -----
-----.

② ----- 서울형 키즈카페 -----
-----.

③ -----
----- 별표와 -----
--.

④ ---- 서울형 키즈카페 --

-----.

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지원) ① -----
-----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
-----.

<삭 제>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전액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동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입장료 전액 감면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동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697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표기(안 제2조, 제3조)
- 나. 가변형, 비상설형인 경우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전화: 02-2133-4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팩 스: 02-2133-0749
- (2) 이메일: kimmm9903@seoul.go.kr
-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3조 중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 상설형이 아닌 가변형, 비상설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용료를 별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u>실내 어린이놀이기구</u> 이용료는 <u>별표 1</u> 과 같이 정한다.	제2조(이용료) ----- ----- ----- ----- <u>서울형 키즈카페</u> ----- ----- <u>별표와</u> ----- --.														
제3조(세부운영) <u>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세부운영) <u>서울형 키즈카페</u> ----- ----- -----.														
[별표 1] <u>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이용료	[별표] <u>서울형 키즈카페</u>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이용요금</th><th>비 고</th></tr><tr><td>입장료</td><td>아동 (0세 ~ 9세)</td><td>5,000원/인/회</td><td><u>2시간 기준</u></td></tr></table>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u>2시간 기준</u>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이용요금</th></tr><tr><td>입장료</td><td>아동 (0세 ~ 9세)</td><td>5,000원/인/회</td></tr></table>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u>2시간 기준</u>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u>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u>서울형 키즈카페</u> 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 공간을 <u>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 공간을 <u>서울형 키즈카페</u> 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u>상설형이 아닌 가변형, 비상설형인 서울형 키즈카페</u>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용료를 <u>별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u>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1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 및 병역에 대한 예우·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입장료 50% 및 개인연습 사용료 30% 감면 관련 내용 추가(안 제9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호다목)
- 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소상공인간편시스템 결제자 제외(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다목 삭제)
- 다. 그 밖의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등기우편·이메일·온라인

- 1) 팩 스: 02-2133-2678
-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체육정책과
- 3) 이 메 일: seoulman20@seoul.go.kr
-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 (이하)”를 “자(이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을 “부과·징수하되,”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주최측”을 “주최 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수급자”를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다목 중 “자 :”를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위해발생시”를 “위해가 발생할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u>설치·운영</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설치·운영</u> <u>기 위해</u> ----- ----- -----.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 <u>별표1</u> ”과 같다.	제2조(설치) ----- ----- ----- <u>별표 1</u> -----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u>자</u>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져도 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 ----- ----- ----- ----- <u>자(이하</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 · 주관하는 체육행사
2. ~ 7. (생략)

② (생략)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

용료는 시장이 부과 · 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 · 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1. ----- 시가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

-- 각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

----- 부과 · 징수하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 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4.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

제9조(입장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주최측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
 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생략)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4.·5. (생략)

 -----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른」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나. (생략)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100분의 30 감액

라.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라. (현행과 같음)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
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
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
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
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 (생 략)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
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
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
나만을 적용한다.

가. ~ 마. (생 략)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삭 제>

바. (현행과 같음)

2.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u>자 : 100분의 5 범위에서</u> <u>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u>감액</u> 사. (생 략) 3. ~ 5. (생 략)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 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 한 <u>위해발생시</u> 2.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위해가 발생할 때</u>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
--	---

	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 행한다.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장기제대 복무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
- 나. 그 밖의 문장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과(전화: 02-2133-4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등기우편·이메일·온라인

- 1) 팩 스: 02-2133-4237
-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박물관과
- 3) 이 메 일: nope01@seoul.go.kr
-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10. (생략)	제9조(무료 관람) ① ----- ----- ----- -----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 17. (생략)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8. · 19. (생략)	19. · 20.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1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장기제대 복무군인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5조제1항제1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과(전화: 02-2133-4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등기우편·이메일·온라인

- 1) 팩 스: 02-2133-4237
-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박물관과
- 3) 이 메 일: nope01@seoul.go.kr
-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8. (생략)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u><신설></u>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
19. (생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72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과학관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조례 일부개정(' 24.5.20.)에 따른 19세 이하 관람료 면제를 본문에 명문화하여 현행화(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13호)

라. 권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02-2133-5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E-mail : kdk77@seoul.go.kr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3) F A X : 02-768-8847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창동)

제6조제1항제3호 중 “6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6조 중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u>서울특별시</u> <u>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u> <u>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u> <u>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u> <u>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u> <u>계동)에 둔다.</u>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 용되는 <u>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u> <u>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u> <u>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u> <u>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u> <u>(하계동)</u> 2. <u>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u> <u>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u> <u>56(창동)</u>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6세</u>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 인 사람 4. ~ 8. (생략) 9.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 10. ~ 12. (생략) <u><신설></u>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19세</u> ----- ----- 4. ~ 8. (현행과 같음) 9.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u>수급자</u> 10. ~ 12. (현행과 같음) 13. 「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u> <u>률</u>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3. (생 략)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 5. (생 략)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장기복무 제대군인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제18조(권한의 위임) -----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 서울특별
시립과학관장-----

-----.

1. ~ 6. (현행과 같음)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